

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4. 26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30일 · 안재홍 의원 외 6인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4월 20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7. 4. 26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안재홍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05. 1. 27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문개정되었고, 2005. 8. 17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·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자연재해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계획 등 사전에 검토할 사항을 정함 (안 제2조).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검토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공무원과 방

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(안 제3조).

-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전체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, 회의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검토요청하고,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를 검토하고,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, 사업시행자,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위원은 공정하고,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협의를 할 의무를 가지며, 용역 등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, 대상사업의 검토협의를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함(안 제12조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안재홍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